

취업규정

취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휴일) ①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2. 1월1일, 현충일, 기독교탄신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공단 창립 기념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어린이 날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및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

② 제1항제1호를 주휴일로 한다. 다만, 부서, 담당업무 또는 탄력근로, 유연근로 등으로 인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대체휴일) ①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휴일을 휴일로 한다.

②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일이 월요일이나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휴일을 휴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녀입영휴가

8. 자녀돌봄휴가

9. 재해구호휴가

10. 장기재직휴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자녀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3(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직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4(재해구호휴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5(장기재직휴가) ① 장기 재직한 직원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②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단 근무기간과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 공단 근무기간은 공단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월수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1.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
3.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공단의 필요에 의해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5.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휴일) ①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휴일(매주 화요일)</u> 2. <u>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u> 3. <u>근로자의 날</u> 4. <u>공단 창립기념일</u> 5. <u>정부가 임시로 정한 공휴일 및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u> <p>② <u>제1항 제1호의 주휴일은 매 주 월, 화요일을 원칙으로 하 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제25조(휴일) ① <u>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화요일</u> 2. <u>1월1일, 현충일, 기독교탄신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공단 창립기념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u> 3. <u>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및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u> 4. <u>어린이 날</u> 5. <u>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및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u> <p>② <u>제1항제1호를 주휴일로 한다. 다만, 부서, 담당 업무 또는 탄력근로, 유연근로 등으로 인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u></p>

제25조의2(대체휴일) 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다만, 공단 경륜사업분야 근무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특별 유급휴가) ①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5. (생략)

6. 퇴직준비휴가

제25조의2(대체휴일) ①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휴일을 휴일로 한다.

②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일이 월요일이나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휴일을 휴일로 한다.

제29조(특별 유급휴가) ① -----

-----.

1.~5. (현행과 같음)

<삭제>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7. 자녀입영휴가

8. 자녀돌봄휴가

9. 재해구호휴가

10. 장기재직휴가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녀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
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3(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직원은 어린이집, 유치
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공
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
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4(재해구호휴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
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5(장기재직휴가) ① 장기

재직 한 직원의 재직기간별 휴
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
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
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②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단 근

무기간과 군 복무기간을 합산
하며, 공단 근무기간은 공단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월수로 계산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 직
위해제, 정직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은 제외한다.

1.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

3.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공단의 필요에 의해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
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5.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수
행을 위한 휴직

제34조의2(퇴직준비휴가) 정년·명
예·조기퇴직을 할 임·직원은
3개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가 전 임
금을 기준으로 한다.

<삭 제>